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나341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함성일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0. 19.

판 결 선 고 2021. 11. 30.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11466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789,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21. 11.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133,7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간존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의 전처인 C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및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C에 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 및 C는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이 법원에서 원고와 C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법원의 간존 심판범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금지급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M'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N'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용 페인트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채권잔액 합의서

채권자 원고 M

채무자 1 B(피고)

채무자 2 O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N에 잔액은 77,147,255원이며 P는 2013년 12월 29일까지의 잔액은 13,445,417원입니다.

B(피고) 사장님 외 O 사장님과의 거래한 총금액은

(N) 77,147,255원

(P) 13,445,417원이며

합계 금액 총 90,592,672원입니다.

위 금액에서 77,147,255원에서 DC한 금액 0.75%는 57,860,441원과 13,445,417원에서 DC한 금액 0.85%는 11,428,604원이며 총괄 DC 금액은 69,289,045원이다.

총괄 DC 금액 69,289,045원에 대하여

1. 채권자 A(원고)와 채무자 B(피고)은 4,000만 원에 합의한다.

2. 단 4,000만 원에 합의함에 있어 조건이 제시되며

조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년 3월 15일 현금 2,850만 원을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 1,150만 원의 미입금 금액에 대하여서는 2017년 3월 15일 이후부터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합의 이후 페인트와 관련된 거래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M 이외에 타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그 즉시 합의사항은 취소되며 (총괄 DC 금액 69,289,045원)에서 입금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합의 금액은 변경된다.

위 4,000만 원에 있어 성실히 이행되었다고 판단될시 총괄 DC 금액 69,289,045원에 관하여 완불증을 작성하여 주기로 합의한다.

라. 원고는 2017. 3. 15. 피고로부터 28,5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 28,500,000원만을 변제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나머지 대금 11,500,000원을 2017. 3. 15.부터 매월 5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는데도 50만 원씩의 분할 변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 69,289,045원에서 기지급된 28,500,000원을 제한 나머지 40,789,045원(= 69,289,045원 - 2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18,344,751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추가로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59,133,796원(= 40,789,045원 + 18,344,7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40,789,045원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는 2017. 3. 15.까지의 물품대금을 69,289,045원으로 정산한 후, 피고는 28,5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1,500,000원을 매달 5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을 40,000,000원으로 최종적으로 감액하고, 피고가 위반하면 이 사건 합의 중 위 감액 약정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정산금 69,289,045원에서 변제액을 제한 나머지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피고는 28,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40,789,045원(= 69,289,045원 - 2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8,344,751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체결일을

전후하여 ‘Q 주식회사 B 사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거래명세서(갑 제3호증의 1)를, ‘주식회사 J, R’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거래명세서(갑 제3호증의 2, 3, 4)를 각 발행한 사실, ② ‘Q 주식회사 B 사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거래명세서 상단에는 ‘법인사업자’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위 거래명세서 중 Q 주식회사인 부분은 2017. 8. 31.부터 2017. 12. 25.까지의 거래 내용인데, 2017. 12. 25.자 잔액은 6,265,655원인 사실, ④ 위 거래명세서 중 ‘주식회사 J’인 부분은 2016. 12. 8.부터 2017. 8. 31.까지의 거래 내용인데, 2017. 8. 31.자 잔액은 2,114,233원인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다가 ⑤ 원고 발행의 거래명세서는 피고 아닌 ‘Q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J’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고 있어 피고 개인과의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 발행의 거래명세서에 따른 잔액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18,344,751원의 거래대금 내역이 산정되지 아니한 점, ⑦ 피고와 ‘Q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J’ 사이의 관계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도 없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S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8,5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40,789,045원을 피고의 동업자에게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0,789,0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우연, 판사 이준철, 판사 한성진